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 7호

2005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 산업자원부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자금 운용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 14.
산업자원부장관

2005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

제1조(목적)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용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지원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가. 용자대상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
- 나. 용자추천기관 : 한국LP가스공업협회(공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집단공급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검사기관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판매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공사)등으로 자금대출을 추천하는 기관, 이하 "()"내의 용어로 칭한다.

- 다. 용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용자대상기관에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 라. 대여 : 용자대상기관이 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 마. 대출 :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의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
- 바. 대출취급기관 : 용자대상기관으로부터 용자금을 대여 받아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금융기관으로서 공사 사장이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 사. 계속사업 : 용자가 최초 실행된 당해연도에 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자금소요가 발생하는 동일사업.

제4조(지원규모 및 조건)

- 가. 지원규모 : 38,000백만원
- 나. 공사는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 사업별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다.

다. 사업별 지원조건

세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범위 및 한도	지원기간 (거치/상환)	추천기관
가스유통구조 개선 사업	LPG충전 사업자	○충전시설 설치(이전포함) 및 개선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구입 ○용기의 구입, 재검사(저장탱크 포함) 등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소요자금 90% 이내 ○사업자당 연 15억원 이내	3/5	공업협회
	판매사업자	○LPG사용시설(판매시설 포함)의 공급설 비 확충, 유지·관리, 기타 안전성향상 비용(운전자금)	○전년도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 액의 25% 이내 ○사업자당 연1억원 이내 ○사업개시 1년미만의 자는 3천 만원 이내 ○전년도 지원사업자는 제외	1/3	판매협회 또는 공사
	집단공급 사업자	○집단공급시설 설치(매입포함) 및 개선 (탱크로리 구입 포함)	○소요자금 90% 이내 ○사업자당 연5억원 이내	3/5	집단공급 조합
	사업자 단체	○가스의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정성 향상	○소요자금 90% 이내 ○사업자단체당 연10억원 이내	1/3	공사
LPG공급방식 개선사업	수입사, 가스공급자	○체적판매시설 설치, 사용자시설의 보일 러 시설개선, 산업용 LPG시설 설치, 벌크 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등	○소요자금 90% 이내 ○사업자당 연30억원	3/5	공사 공업협회 판매협회
도시가스시설 개선사업	도시가스 사업자	○노후배관 교체 ○배관망도 전산화 ○정압기 등 시설개선 ○LNG전용설비 설치 ○안전장비구입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등	○소요자금 90% 이내 ○사업자당 연50억원 한도	3/5	도시가스협회
	기기제조 사업자	○가스안전관련 기기의 개발	○소요자금 90% 이내 ○사업자당 총사업비 10억원 이내	3/5	공사
검사기관 시설개선사업	전문검사기관	○검사시설 및 장비의 개선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소요자금 90% 이내 ○사업자당 연10억원 이내	3/5	검사기관협회

※ 매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한다.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보수·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라. 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분기별 변동 금리)에 따른다.

마. 지원자금은 시설자금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으로 취급하기 곤란한 사업(가스안전 관련기기의 개발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기준을 준용하여 운전자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가.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의 대출 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이 지침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출추천을 받는 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다. 추천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대출추천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라. 공사 및 대출취급기관은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대출추천)

가. 추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 추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순으로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추천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후 5일 이내에 대출추천을 하여야 한다.

나. 추천기관은 자금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추천 신청전에 사업자별로 일정한 범위(최대 50%)내에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다.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신청사업의 총 소요자금 중 당해연도에 집행(인출)될 소요자금만 추천하여야 한다. 계속사업의 경우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에서만 인정하되, 당해연도 추천금액 및 차년도 이후 소요금액을 추천서에 연도별로 구

분하여 표시하고, 차년도 이후 지원 금액은 해당연도에 조성되는 자금에서 우선 추천한다.

라. 추천기관은 사업 착수 일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추천할 수 있다.

마. 사업별 연간추천총액은 대출 포기율을 감안하여 적정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바. 추천기관은 대출추천 후 추천내역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승인 및 지급범위 등)

가. 대출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대출 승인일은 당해연도 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 또는 검사장비 구입 등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대출추천금액의 30%(체적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경우 50%)범위내의 계약금 또는 선급금

② 체적판매시설 설치의 경우, 공사에서 발급한 안전검사(점검) 확인서(별표 2 서식)가 있을 경우

다. 대출취급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시설공급자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증빙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출 추천 및 승인의 취소 등)

가.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자가 대출추천일로부터 5개월(계속사업의 경우 대출추천 당해연도 말)이내에 최초 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 및 대출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 자금인출일은 첫 번째 자금이 공사

로부터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날이며, 이 때 5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대여일까지를 최초 인출일로 본다.

나. 제6조제나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이 대출 받을 자의 사정에 의해 9월말까지 추천 및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자금 배정 또는 대출 추천을 취소한다. 단, 9월말까지 대출취급기관이 공사에 대여신청한 것은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다. 대출추천을 받은 자 또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연도 말까지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인출잔액에 대해서는 대출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제9조(대출금의 사후관리)

가. 대출취급기관은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용도관리를 행하여야 하며,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에 자금사용자로부터 자금사용에 대한 증빙(별표 1 서식)을 징구(LPG사용시설의 공급설비 확충, 유지·관리비용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취급기관의 승인으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금이 용도의 목적에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 기간전이라도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 공사는 대출금을 용도의 목적에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이 지침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출취급기관은 “나”의 규정에 의한 대출원리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익월 15일까지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마. 추천기관은 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해 대출 실행후 1개월 이내 자금 사용자로부터 자금사용에 대한 증빙(별표 1 서식)을 징구(LPG사용시설의 공급설비 확충, 유지·관리비용은 제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바. 공사는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 추천기관 및 대출받은 자에 대해 실지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이월사용 등)

가. 매회계연도의 융자금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전년도 사업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내에 인출하지 못한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

② 기성고(대금지급)가 전년도 종료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연도내에 대출승인(또는 추천)을 받지 못한 것을 추천기관이 당해연도 5월말까지 추천하는 경우.

부 칙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제7조제나항제②호”에 의한 별표 2서식은 공사에서 발급한 “검사필증 발급확인서” 및 “요청점검 확인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이 지침 “제9조제가항 및 제마항”의 자금사용에 대한 증빙을 대출추천 및 대출신청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별표 1]

가스의안전관리및유통구조개선사업자금 사용 내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추천기관(번호)	()	추 천 일	
대 출 금 액		대 출 일	

자금사용내역

증빙번호	일 자	세 부 내 역	금 액	비 고
합 계				

상기와 같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자금을 사용하였으며, 상
기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즉시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 은행 귀중
- (추천기관) 귀중

첨부 : 세금계산서사본 등 관련증빙서류(증빙번호는 첨부되는 증빙서류 번호임)

[별표 2]

가스 안전검사(점검) 확인(요청)서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검사(점검)내역

NO	개선시설		소재지	검사(점검)일	비고
	업소(주택)명	개소			

상기의 시설에 대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고, 관련법규에 의거 안전검사(점검)를 필요하였음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귀중

상기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점검)를 필요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

○○은행 귀중